

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|
| 제정 | 1996. 3. 1 | 규칙 | 제 16호 |
| 개정 | 1998. 4. 10 | 규칙 | 제132호 |
| | 2003. 12. 16 | 규칙 | 제349호 |
| | 2005. 10. 5 | 규칙 | 제417호 |
| | 2005. 12. 31 | 규칙 | 제501호 |
| | 2007. 12. 17 | 규칙 | 제553호 |
| | 2010. 2. 9 | 규칙 | 제599호 |
| 일부개정 | 2011. 2. 14 | 규칙 | 제629호 |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1. 2. 14>

제2조(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)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(이하 “징계등”이라 한다)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, 뉘우치는 정도,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,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기준 및 별표 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12. 17, 2010. 2. 9, 2011. 2. 14>

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9, 2011. 2. 14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(이하 “징계의결등”이라 한다)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9, 2011. 2. 14>

1.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

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·집행하거나,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·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.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·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, 정책을 수립·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[제목개정 2011. 2. 14]

제2조의2(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)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2. 14>

1.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: 내부종결 처리
2. 공소권 없음 결정,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: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,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, 별표 2 적용
3. 기소유예 결정,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: 별표 1, 별표 2 적용

[본조신설 2010. 2. 9]

제3조(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) ①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12. 17, 2011. 2. 14>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 문책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12. 17, 2011. 2. 14>

1.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,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

사건

- 2.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
- 3.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

제4조(징계의 감경)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12. 17, 2010. 2. 9>

- 1. 「상훈법」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
- 2.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. 다만, 비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,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장(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) 광역시장,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
- 3.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
- 4.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

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2. 17>

제5조(징계의 가중)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.

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4조의 규

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에 발생한 비위로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의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,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결서의 작성요령)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(이하 “징계등 의결서”라 한다)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2. 14>

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“불문으로 의결 한다. 다만,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.”라고 기재한다. <개정 2011. 2. 14>

제7조(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)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규정 제2조제6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, 징계부가금의 배수(倍數)를 적어야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1. 2. 14>

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 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, 근무성적, 뉘우치는 정도,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12. 17, 2010. 2. 9, 2011. 2. 14>

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2. 14>

[제목개정 2011. 2. 14]

제8조 삭제 <1998. 4. 10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4. 1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12. 1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17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2. 31 규칙 제501호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2007. 12. 17 규칙 제553호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2010. 2. 9 규칙 제599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징계종류 및 징계의 효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제4조제1항의 “징계사유의 시효가 5

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

년”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
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2. 14 조례 제62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0. 2. 9>

징계양정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|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|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| 비위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 거나, 비위 정도 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|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|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비위의 유형 | | | | |
| 1. 성실의무 위반 | | | | |
| 가. 공금횡령 | 과 면 | | | |
| 나. 공금유용, 업무상 배임 | 과 면 | 파면-해임 | 해임-강등 | 정직-감봉 |
| 다.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| 과 면 | 해 임 | 강등-정직 | 감 봉 |
| 라.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| 과 면 | 해 임 | 강등-정직 | 감봉-견책 |
| 마. 기 타 | 파면-해임 | 강등-정직 | 감 봉 | 견 책 |
| 2. 복종의무 위반 | | | | |
| 가.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 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| 과 면 | 해 임 | 강등-정직 | 감봉-견책 |
| 나. 기타 | 파면-해임 | 강등-정직 | 감 봉 | 견 책 |
| 3. 직장 이탈 금지 위반 | | | | |
| 가.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| 과 면 | 해 임 | 강등-정직 | 감봉-견책 |
| 나. 무단결근 | 과 면 | 해임-강등 | 정직-감봉 | 견 책 |
| 다. 기 타 | 파면-해임 | 강등-정직 | 감 봉 | 견 책 |
| 4. 친절·공정 의무 위반 | 파면-해임 | 강등-정직 | 감 봉 | 견 책 |
| 5. 비밀 엄수 의무 위반 | | | | |
| 가. 비밀의 누설·유출 | 과 면 | 파면-해임 | 강등-정직 | 감봉-견책 |
| 나.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| 파면-해임 | 해임-강등 | 정 직 | 감봉-견책 |
| 다.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 단방치 | 파면-해임 | 강등-정직 | 정직-감봉 | 감봉-견책 |
| 라. 개인정보 무단조회·열람 및 관 리 소홀 등 | 파면-해임 | 강등-정직 | 감 봉 | 견 책 |
| 마.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| 파면-해임 | 강등-정직 | 감 봉 | 견 책 |

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

|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|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| 비위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 거나, 비위 정도 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|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 거나, 비위 정도 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|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. 청렴의무 위반 | 과 면 | 파면-해임 | 강등-정직 | 감 봉 |
| 7.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. 성폭력(미성년자) 나. 성폭력 다. 성희롱 라. 기타 | 과 면 과 면 파면-해임 파면-해임 | 파면-해임 해 임 해임-강등 강등-정직 | 해임-강등 강등-정직 정직-감봉 감봉 | 감 봉 견 책 견 책 |
| 8.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| 파면-해임 | 강등-정직 | 감 봉 | 견 책 |
| 9. 정치운동 금지 위반 | 과 면 | 해 임 | 강등-정직 | 감봉-견책 |
| 10. 집단행위 금지 위반 | 과 면 | 해 임 | 강등-정직 | 감봉-견책 |

※ 비고 : 제7호에서 “성희롱”이란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.

[별표 1의2] <신설 2011. 2. 14>

징계부가금 부가기준(제2조 관련)

|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,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금품·향응 수수 | 금품·향응 수수액의 4~5배 | 금품·향응 수수액의 3~4배 | 금품·향응 수수액의 2~3배 |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~2배 |
| 공금 횡령·유용 | 공금 횡령·유용액의 3~5배 | 공금 횡령·유용액의 2~3배 | 공금 횡령·유용액의 2배 | 공금 횡령·유용액의 1배 |
| <p>※ 비고</p> <p>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(整數)를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(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, 벌금·변상금·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·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(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, 형량 및 실행,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.</p> | | | | |

[별표 2] <개정 2010. 2. 9>

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| 징 계 사 유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|
| | 파면 | 해임 이상 | 강등 이상 | 정직 이상 | 감봉 이상 | 견책 이상 | |
| 1. 금품·향응수수 | | | | | | |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금품·향응요구, 정기·상습수뢰·알선시: 해임이상 |
| 가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| | | | | | | |
| 1) 50만원 미만 | | ○ | | | | | |
| 2) 50만원 이상 | ○ | | | | | | |
| 나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| | | | | | | |
| 1) 50만원 미만(수동) | | | | ○ | | | |
| 2) 50만원 미만(능동) | | | ○ | | | | |
| 3)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| | ○ | | | | | |
| 4) 100만원 이상 | ○ | | | | | | |
| 다.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·향응수수 | | | | | | | |
| 1) 50만원 미만(수동) | | | | | ○ | | |
| 2) 50만원 미만(능동) | | | | ○ | | | |
| 3)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(수동) | | | | ○ | | | |
| 4)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(능동) | | | ○ | | | | |
| 5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| | ○ | | | | | |
| 6) 300만원 이상 | ○ | | | | | | |
| 라. 접대성 성매수 | | | | | | | |
| 1) 접대성 성매수 1회 | | ○ | | | | | |
| 2)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| ○ | | | | | | |

| 징 계 사 유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|
| | 파면 | 해임 이상 | 강등 이상 | 정직 이상 | 감봉 이상 | 견책 이상 | |
| 2. 품위손상 등 | | | | | | | 고의·과실 또는 비위 의 도의 경 중에 따라 가감 |
| 가. 공금 등 횡령 | ○ | | | | | | |
| 나. 공금 등 유용 | | | | | | | |
| 1)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| | | ○ | | | | |
| 2)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| | | | | ○ | | |
| 다. 업무상 배임 | | | | | | | |
| 1)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| | | ○ | | | | |
| 2)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| | | | | ○ | | |
| 라.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| | | | | | | |
| 1)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| | | ○ | | | | |
| 2)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| | | | | ○ | | |
| 마.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| | | | | | ○ | |
| 바.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| | | | | | | |
| 1)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| | | | ○ | | | |
| 2)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| | | | | ○ | | |
| 사. 음주운전 | | | | | | | 횡수산정에 포 함 되 는 음 주 운 전 적발의 경 과 기간에 따라 가감 (무면허 또 는 신분 을 속인 경 우 에는 가 중 하여 징 계) |
| 1) 면허정지(0.05%~0.10%미만) 1회 | | | | | | ○ | |
| 2) 면허정지(0.05%~0.10%미만) 2회 | | | | | | ○ | |
| 3) 면허정지(0.05%~0.10%미만) 3회 | | | | ○ | | | |
| 4) 면허취소(0.10%이상) 1회 | | | | | ○ | | |
| 5)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 | | | | | ○ | | |
| 6)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| | | | ○ | | | |
| 7) 면허취소(0.10%이상) 2회 | | | | ○ | | | |
| 8) 면허취소(0.10%이상) 3회 | | ○ | | | | | |
| 9)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| | | | | ○ | | |
| 10)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| | | | ○ | | | |
| 11)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| | ○ | | | | | |
| 12) 음주운전 교통사고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 | | | | ○ | | | |
| | | | | | ○ | | |
| 13)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 | | ○ | | | | | |
| | | | | ○ | | | |

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

| 징 계 사 유 |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---|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
| | | 파면 | 해임 이상 | 강등 이상 | 정직 이상 | 감봉 이상 | 견책 이상 | |
| 아. 교통사고 | | | | | | | | · 과실의 경 중에 따라 가감 · 교통 사고 인명피해 6주미만은 “훈계”(보 험처리되 거나 상호 합의하여 「공소권 없음」으 로 통보될 경우 불문 |
| 1) 교통사고 인명피해 (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) | 피해자가 중상 일 때(6주이상, 뇌 손상은 4주이 상 진단) | | | | | | ○ | |
| | 피해자가 사망 한 때 | | | | | ○ | | |
| 2)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| 인적피해 발생 | | | | | ○ | | |
| | 물적피해 발생 | | | | | | ○ | |
| 3) 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주 | 인적피해 발생 | | ○ | | | | | |
| | 물적피해 발생 | | | | ○ | | | |
| 자. 무면허 운전 | | | | | | | | 무면허 음주 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 계 |
| 1)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 에서 운전 | | | | ○ | | | | |
| 2) 면허 미 취득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된 상태에서의 운전 | | | | | | ○ | | |
| 차.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| | | | | | | |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|
| 1) 공무시간 중인 경우 | | | | | ○ | | | |
| 2)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 | | | | | | | ○ | |
| 카. 성 관련 범죄행위 | | | | | | | | |
| 1) 강간, 미성년자와의 성행위·성폭력 등 | | ○ | | | | | | |
| 2) 성 폭력, 강제추행 | | | ○ | | | | | |
| 3) 성매수 | | | | ○ | | | | |
| 4) 성희롱, 간통 | | | | | ○ | | | |
| 타. 상해 및 폭행, 협박 등 | | | | | | ○ | | |
| 파. 절도, 사기 등 형사범죄 | | | | | | | | |
| 1) 절도, 사기, 공갈, 위증, 무고 등 | | | | | | ○ | | |
| 2) 강도 등 | | ○ | | | | | | |
| 하. 도박 등 사행행위 | | | | | | | | |
| 1) 상습적인 경우 | | | | ○ | | | | |
| 2) 일시적인 경우 | | | | | | | ○ | |

| 징 계 사 유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과면 | 해임 이상 | 강등 이상 | 정직 이상 | 감봉 이상 | 견책 이상 | |
| 3.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| | | | | | | 고 의 · 과 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|
| 가.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| | | | | | ○ | |
| 나.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| | | | | | ○ | |
| 다.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| | | | | | ○ | |
| 라. 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 | | | | | ○ | | |
| 마.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 의 무상 임차 | | | | | ○ | | |
| 바.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| | | | | | ○ | |
| 사.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 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의 수수 | | | | | ○ | | |
| 아.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| | | | | | ○ | |
| 4. 복무위반 | | | | | | | |
| 가. 무단결근(월 3일 이상) | | | | ○ | | | |
| 나. 지참,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(월 3 회이상) | | | | | | ○ | |
| 다.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| | | | | | ○ | |
| 라. 당숙직 근무 위반 | | | | | | | |
| 1)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(이석) | | | | | ○ | | |
| 2) 당숙직 중 음주(만취) 및 유기행위 | | | | | ○ | | |
| 3)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| | | | | | ○ | |
| 마.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 | | | | | | ○ | |

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

| 징 계 사 유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파면 | 해임 이상 | 강등 이상 | 정직 이상 | 감봉 이상 | 견책 이상 | |
| 5.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| | | | | | |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|
| 가. 중요 비밀누설·유출 | | ○ | | | | | |
| 나.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| | | | ○ | | | |
| 다.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| | | | | ○ | | |
| 라. 개인정보 무단조회·열람 및 관리소홀 등 | | | | | ○ | | |
| 마.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| | | | | | ○ | |
| 바. 경미한 기밀누설·유출 | | | | | | ○ | |
| 6. 공문서 관리 | | | | | | | |
| 가. 공문서 위조·변조 | | ○ | | | | | |
| 나.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| | | | ○ | | | |
| 7. 소송수행 관련 | | | | | | | |
| 가.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| | | | | | ○ | |

- 비고. 1.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.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.
 2.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.
 3.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.
 4.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
 - 면허정지 : 중징계
 - 면허취소 : 직권면직
 5. 음주운전 횡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
 6. 음주운전의면허정지 및 취소의 횡수는 이 규칙 시행 이전의 비위행위를 포함한 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[별표 3]

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(제3조 관련)

|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| 비위 행위자 (담당자) | 직 상 감 독 자 | 차 상 감 독 자 | 최 고 감 독 자 (결재권자)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정책결정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사항 (고도의 정책사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적인사항 | 4 | 3 | 2 | 1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순, 반복 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사항 • 경미사항 | 3 | 1 | 2 | 4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독행위 | 1 | 2 | 3 | 4 |

※ 1, 2, 3,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.

[별표 4] <개정 2010. 2. 9>

징계의 감경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|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|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|
|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(경고)</p> |

[별지 제1호서식] 삭제 <1998. 4. 10>